

#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과내규

2024.3.29.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본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규정과과의 관계) 신한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은 본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학과 교수회의)

- ① 학과 제내규의 제정 및 개정,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 ②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되며, 학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4조(학부운영)

- ① 학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의 추천대상은 장학생 선발 내규에 의하며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학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의 장학금 기금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장학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단 학생임원장학 대상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의 졸업논문과 관련된 졸업요건은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졸업작품과 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 과목에서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 개발 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다.
  3. 졸업작품의 심사는 졸업작품발표회 및 합격사정을 위한 졸업인증심사회를 통해 합격여부가 결정되며 평가요소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4. 졸업작품의 평가는 프로젝트의 완성도, 적용기술의 우수성, 개발 산출물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팀별로 80점을 부여하고, 외부 평가가 이루어진 교외 경진대회 참여 여부와 TOPCIT 응시 여부 등에 개인별로 20점을 부여한다.
  5. 졸업논문은 합격사정을 위한 학과 교수회의 이전에 완성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관련 학회에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회에 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는 재학생의 선출에 의한 자율 기구로서, 학회장, 부학회장 및 필요한 약간 명의 부장과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학년별 과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한다.
  3. 학생회의 제사업은 학생회 자율에 의하여 수행하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

기타 학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 혹은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